



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

[시행 2024. 11. 27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57호, 2024. 11. 27., 제정]

고용노동부(공공노사관계과), 044-202-7652

1.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

조합원 규모*	연간 시간 한도	연간 사용가능인원
299명 이하	최대 1,000시간 이내	•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 •다만,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'최대 2명'으로 정한다.
300명~699명	최대 2,000시간 이내	
700명~1,299명	최대 4,000시간 이내	
1,300명~1,999명	최대 6,000시간 이내	
2,000명~3,999명	최대 8,000시간 이내	
4,000명~4,999명	최대 10,000시간 이내	
5,000명~14,999명	최대 12,000시간 이내	
15,000명 이상	최대 28,000시간 이내	

* '조합원 규모'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의 재직 중인 조합원 수를 의미함

2.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,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.

부칙 <제2024-57호,2024.11.27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